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신청 안내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라체르보푸르시오써밋(행당제7구역재개발현장)현장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입회를 희망하시는 입주예정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2025. 05. 21(수), 18시**까지 입회신청서를 작성(스캔본) 하셔서, 공급계약서(스캔본)와 함께 아래 현장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근거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환경부(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실내공기질 측정 일정 및 측정 세대: 첨부1. 측정계획서 참고(현장 여건에 따라 측정세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회 일정: 2025.05.30. (금)
- 입회 신청 인원: 2명
- 입회 신청 입주예정자 작성 필요 자료
 - 입회 신청서 스캔본(또는 사진촬영본) 1부. (첨부2. 입회신청서 양식 참조)
 - 공급계약서 스캔본(또는 사진촬영본) 1부.
- 입회 신청 방법: 입회신청서 작성 후 공급계약서와 함께 스캔본을 dw7hd@naver.com 으로 이메일 발송
- 입회자 선정 및 통보 방식: 선착순 2명 (개별통보, 미선정 입주예정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회 신청 접수 기간: 2025.05.09. ~ 2025.05.21. 18시
- 입회 일정 안내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07:30 | 입회 장소 접견 | 장소 추후 공지예정 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필수 |
| 07:30 ~ 07:45 | 측정계획 및 동선계획 설명 (참석 서명 진행) | |
| 07:45 ~ 08:00 | 측정세대이동 | |
| 08:30 ~ 09:00 | 각 세대 확인 | 밀폐 및 가구 개폐 조건 확인 후 퇴실 |
| 09:00 ~ | 입회자 현장 퇴장 | |

- 측정당일 협조 요청사항(환경부 가이드라인 준용)
 - 도착시간 준수(지연 시 측정일정 차질 발생)
 - 사진 촬영 및 개인 세대 방문 금지
 - 향수, 강한 화장품 사용, 흡연 불가
 - 개인 간이 측정기 등 사용 불가 및 단독 이동 불가 등
 - 기타 실내공기질 측정 및 입회 진행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 #. 첨부파일:
1. 측정계획서 1부.
 2. 입회신청서 양식 1부.
 3. 환경부 가이드라인 1부.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행당제7구역재개발)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 | | | | | | | | | | | |
|-------------------|------------|---|--------------------|--------------------|--------------------|----------------------|----------------------|--------------------|--|--|--|
| 시 공 자 | 상호(사업장 명칭) | 대우건설(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 | | 성명(대표자) | 김 보 현 |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길 71 (전화번호: 02-2297-8170) | | | | | | | | | |
| | 공동주택 현황 | 공급세대 | 세대별 규모 | | | | | | | | |
| | | 958 세대 | 36 m ² | 45 m ² | 59A m ² | 59B m ² | 59C m ² | 59D m ² | | | |
| 75 | | | 197 | 114 | 82 | 54 | 60 | | | | |
| 65 m ² | | | 84A m ² | 84B m ² | 84C m ² | 116PA m ² | 116PB m ² | | | | |
| 58 | 198 | | 59 | 57 | 2 | 2 | | | | | |
| 측 정 자 | 상호 | (주)푸른환경산업연구소 | | | 등록번호 | 114-86-35480 | | | | | |
|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청림 3길 9, 그린빌딩 3~6층 (전화번호: 02-583-0203) | | | | | | | | | |

세부 측정계획

| 구분 | 측정 일시 (시간) | 측정 지점 (동-호수) | 거실 방향 | 측정항목 | | | | | | |
|------|---------------|--------------|-------|--------|----|-----|------|-----|-----|----|
| | | | |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 |
| 1지점 | 05/30 (13:00) | 101동 1503호 | 남서 | ○ | ○ | ○ | ○ | ○ | ○ | × |
| 2지점 | 05/30 (13:05) | 102동 501호 | 남동 | ○ | ○ | ○ | ○ | ○ | ○ | × |
| 3지점 | 05/30 (14:15) | 103동 2803호 | 남 | ○ | ○ | ○ | ○ | ○ | ○ | × |
| 4지점 | 05/30 (14:20) | 103동 2804호 | 남 | ○ | ○ | ○ | ○ | ○ | ○ | × |
| 5지점 | 05/30 (15:30) | 104동 1503호 | 서 | ○ | ○ | ○ | ○ | ○ | ○ | × |
| 6지점 | 05/30 (15:35) | 104동 1504호 | 서 | ○ | ○ | ○ | ○ | ○ | ○ | × |
| 7지점 | 05/30 (13:00) | 105동 301호 | 남동 | ○ | ○ | ○ | ○ | ○ | ○ | × |
| 8지점 | 05/30 (13:05) | 105동 302호 | 남동 | ○ | ○ | ○ | ○ | ○ | ○ | × |
| 9지점 | 05/30 (15:30) | 106동 304호 | 남동 | ○ | ○ | ○ | ○ | ○ | ○ | × |
| 10지점 | 05/30 (14:15) | 107동 1404호 | 남서 | ○ | ○ | ○ | ○ | ○ | ○ | × |
| 11지점 | 05/30 (14:20) | 107동 2506호 | 남서 | ○ | ○ | ○ | ○ | ○ |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행당제7구역재개발) 시공사 (서명 도장인)



작성방법

- 거실방향란은 8방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예: 남동향, 남남향)
- 측정항목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측정항목 중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 ○를 기재합니다.

라체르보푸르시오써밋(행당제7구역재개발)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 | | | |
|---------------------|---|----------|-----------------|
| ① 입회 희망일 (년/월/일) | | | |
| 신청인 정보 | ② 성명 | | ③ 생년월일 |
| | ④ 주소 | (전화번호:) | |
| 근거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입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라체르보푸르시오써밋(행당제7구역재개발) 시공자 귀하

| | |
|------|---|
| 첨부서류 |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측정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 1.

환경부

● 목 차 ●

| | |
|-------------------------|---|
| 1장 목 적 | 1 |
| 2장 적용범위 | 1 |
| 3장 용어 | 1 |
| 4장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절차 | 2 |
| 4.1 사전 준비사항 | 2 |
| 4.2 측정계획의 안내·공고 | 3 |
| 4.3 입회자의 선정 및 안내 | 3 |
| 4.4 측정시 고려사항 | 4 |
| 4.5 입회자 준수사항 | 5 |
| 4.6 입회자 확인 중점사항 | 5 |
| 4.7 기타 사항 | 6 |

1 목 적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입주예정자 입회하에서 이루어지는 측정 세부 절차를 제시한다.

2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적용한다.

3 용 어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신축되는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표준시험방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측정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축공동주택 시공자 및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중 실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자

○입회자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장입회자로 선정된 입주 예정자

4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절차

4.1 사전 준비사항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 시공자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일 이전까지 실내 마감 등 측정환경 조성을 마친 측정세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전 측정 조건 만족 여부를 사전점검 하여야 한다.

<참고> 신축 공동주택 시료채취 세대 선정 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30(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최근 고시 참조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 세대일 때 3 개 세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한다.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 세대씩 추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표 1).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 저층부는 최하부 3 층 이내, 고층부는 최상부 3 층 이내, 중층부는 전체 층 중 중간의 3 개 층을 의미한다 (예 : 15 층 건물에서 저층부는 1 층 ~ 3 층, 중층부는 7 층 ~ 9 층, 고층부는 13 층 ~ 15 층).

단, 주상복합아파트 등 1 층이 주거세대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거세대가 시작하는 최저층을 1층으로 정하여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이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정된 시료채취 세대 수를 넘지 않도록 각 동에서 골고루 선택한다. 하나의 단지에 시공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시공자별로 구분한 총 세대수에 따른 시료채취 세대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표 1> 신축 공동주택 시료채취 세대 수의 예

| 총 세대수 | 시료채취 세대 |
|-----------|---------|
| 100 ~ 199 | 3 세대 |
| 200 ~ 299 | 4 세대 |
| 300 ~ 399 | 5 세대 |

시공자는 입회자가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을 위한 안내사항(입회 목적, 주의사항, 안전수칙, 중점 점검 사항, 실내공기질공정시험 기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만들어 측정 전 고지하여야 한다.

나. 입회자

시공자 및 측정자가 안내한 내용 및 본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외 측정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2 측정계획의 안내·공고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예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알림 및 공고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통보 등의 방식을 통해 실시한다.

4.3 입회자의 선정 및 안내

가. 입회자의 선정

시공자는 입회자 선정 시 입회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시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측정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측정 현장에서의 안전문제, 측정 오류발생 예방 등의 사유로 입회자를 포함한 총 측정자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組)를 구성할 경우 조당 입회자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 (예시) A조: 측정자 2인 + 입회자 1~2인 / B조: 측정자 3인 + 입회자 1~2인

나. 입회자 선정 결과 안내

시공자는 입회자가 선정된 경우,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입회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방식으로 입회자 선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4.4 측정시 고려사항

시공자 및 측정자는 실내공기질 측정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입회자 확인

시공자는 입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해진 입회 시점에서 측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입회자 입회 시점

입회자 입회 시점은 아래 그림에 따른다. 단,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자가 입회 시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 라돈



*시료채취 시간 및 횟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 밀폐조건에서 30분/1회씩 연속 2회 측정
- 라돈 : 밀폐조건에서 48시간 측정 후 환기설비 가동조건에서 24시간 측정

<그림 1> 측정 세대 입회자 입회 가능 시점

다. 입회자 퇴실 시점

측정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회자는 측정 전에 현장에서 세대 공기 밀폐 확인 등 입회자가 점검할 내용을 확인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4.5 입회자 준수사항

입회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영향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입회 측정 관련 사항 사전 숙지

입회자는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을 위해 입회 목적, 주의사항, 안전 수칙, 중점 점검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개인 용품 휴대 금지

입회자는 개인이 소유한 라돈 간이측정기 등을 측정 현장에 지참할 수 없다.

다.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수 사용,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흡연 등은 입회 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며, 입회 당일 입회를 마치는 시점까지는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계없는 사진 촬영 및 측정 현장에서 입회자의 단독 이동은 할 수 없다.

4.6 입회자 확인사항

입회자는 입회 시 아래 항목과 같이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측정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본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참여한다.

가. 세대공기 밀폐 확인

실내공기질 시료채취 전 밀폐한 실내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외부 공기와 면하고 있는 창문, 대문이 모두 닫혀 있는지 점검한다.

나. 내부 인테리어

불박이 장의 문, 방문의 문, 싱크대 문 등 내부 인테리어 제품의 문들이 모두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다. 측정 장비 위치

시료채취 장치 또는 측정장치가 거실 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4.7 기타 사항

가. 선정된 입회자 불참 시

측정이 임박한 시점에 입회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경우, 해당 입회자는 입회가 불가함을 확인하는 서류 등 (이메일, 문자 등)을 제출하고, 시공자는 타 입회자에게 대체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입회자의 측정 비협조시

측정자는 입회자가 측정 결과, 측정 과정,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한 후 해당 입회자를 제외하고 측정할 수 있다. 해당 세대의 모든 입회자가 비협조 시 타 세대의 입회자를 대체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다. 입회 대상 세대의 측정환경 미조성시

시공자 또는 입회자가 측정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측정자는 관련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시공사 및 입회자와 협의하여 타 세대로 대체하여 측정하는 등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그 외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현장 정전, 기기오류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측정자가 측정값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공자와 협의하여 재측정을 할 수 있다. 재측정은 당시 입회했던 동일 입회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자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입회 불가를 통보할 경우 시공자는 타 세대의 입회자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